

사슴농가 자가도축 계속 유지토록...

- 본회 농림부에 의견 제출 “간단한 자가도축장 마련해 위생적으로 도축하겠다” -

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 사슴이 포함되어 자가도축을 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중탕 가공 등 농가소득원 보호를 위해 자가도축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본회 주장이 받아들여져 5년 간 유예된 바 있다. 그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올해.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슴도 도축장을 통해 도축을 실시해야 한다. 그러나 현재 중탕시설을 갖춘 농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농가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, 확인을 거친 후 중탕을

가공해야 하는 판매 특성상 도축장을 통한 도축은 그 불편함을 떠나 양록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. 또한 한번에 한 마리 정도를 도축하는 농가 특성상 매번 도축시마다 도축을 해봄으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과 더불어 운반시 필요한 냉동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, 개별 농가당 간단한 도축시설을 갖추면 현행대로 자가도축을 가능케 하자는 요지의 공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. 아래는 그 공문 내용.

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제출

1.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. 귀 부 고시(2002. 4. 13.)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에 대한 본회 의견을 볼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

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

▣ 관련 법규 현황

- 98년 6월 20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로 사슴이 도축대상 수축에 포함됨.
- 다만, 부칙 제 1조 단서조항으로

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유예됨.

▣ 사슴농장의 자가도축 현황

- 전국 1만 5천 사슴사육 농가중 약 50% 중탕가공시설 설치
- 전업규모 농가(약 7천호)의 경우 약

80%(5천6백호)가 중탕가공시설 설치

- 시설 미설치 농가의 경우 인근 농가 또는 건강원에 의뢰 가공
- 양록산물 판매는 특성상 소비자의 농장 직접방문 및 확인 후 이루어짐
- 중탕가공 또한 소비자의 확인 하에 전 과정이 이루어 짐(시중 저질 가짜 양록관련 제품 범람으로 소비자 확인심리가 강함)
- 녹혈소비 감소, 값싼 수입녹용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중탕가공 판매로 대체하고 있음(농가 총 조수입 중 약 40% 추정)

▣ 자가도축 금지시 문제점

- 소비자 직접확인 어려움으로 신뢰유지 차질(시중품과의 차별화 불가)
- 매 중탕가공시마다 멀리 떨어진 도축장 이용(1회 도축두수가 대부분 1두 미만임)으로 부대비용 발생(도축료 포함)
- 냉장 운송차량 등이 구비되지 않아 도축후 수송시 식육의 변질 등 우려
- 기존 도축장 이용시 사슴도축을 위한 전용시설(몰이통로, 보정시설 등) 미비로 실제 도축 불가

- 주말농장, 통마리 관광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양록산물 판매수단이 크게 제한되어 농가경영 부실화 우려
- 결과적으로 고객 농장유치 판매 관행 중단으로 생산물 판매부진 및 경영악화 초래(녹용 및 가공품 유통시장 전무한 실정임)

▣ 본회 의견

- 1)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 1

조 <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>를 <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시행은 농림부령에서 별도로 정한다>로 개정.

2) 시행규칙(농림부령)에 '사슴 자가도축 및 처리 시행요령'을 제정

3) 시행요령의 골자는,

가. 자가소비 및 자가가공 판매를 위한 자가도축 희망 농가는 간이도축 작업장 및 간이정화조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

나. 사슴농장내 간이도축 작업장 및 간이정화조 설치 기준 마련(농가 재정부담 최소화 고려)

다. 농림부가 지정하는 생산자단체(한국양록협회)장의 시설설치 및 운영 확인서를 관할 시, 군에 제출함으로써 자가도축 농가자격 부여

라. 매년 1회 이상 사슴자가도축 실시 요령 및 축산물 위생 교육(생산자 단체 주관)이수 의무화

마.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적정 시설 설치 및 요령준수 여부 자율지도, 감독, 임의자가도축 행위 지도 및 고발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함

바. 정육판매 목적 도축, 또는 가공제품용 원료용도의 대량도축에 대해서는 자가도축 실시요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, 허가된 도축장을 통해 가능토록 규정